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98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창업지원단), 02-970-9152

제정 2016. 12. 28.

전부개정 2020. 6.24.

개정 2021. 2.26.

개정 2021. 6. 21.

개정 2022. 2.16.

개정 2022. 8. 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7조의2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」제18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창업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의 조 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창업지원 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창업교육"이란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,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육 과정과 예비창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경영지식, 가치관, 태도 등을 함양하는 일체 의 활동을 말한다.
- 2. "창업보육"이란 산업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자 발굴, 창업기업 유치, 창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종합경영 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창업사업화지원"이란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및 창업프로그램을 활용하여

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,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4. 메이커활동" 이란 문제해결 및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,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함께 추진하며, 다양한 도구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유 및 소통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- 제4조(조직) ① 지원단에 창업전략기획팀, 창업운영지원팀, 창업교육센터, 창업보육센터, 창업사업화지원센터, 창업메이커지원센터를 둔다.
 - ② 지원단에 창업지원단장(이하 "단장"이라 한다)과 창업지원부단장(이하 "부단장"이라 한다)을 두며, 각 센터에는 센터의 장(이하 "센터장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③ 단장, 부단장 및 센터장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④ 지원단과 각 센터에는 팀장 및 행정직원을 두며,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인수행 및 관리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사업운영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,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과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 규정」에 따른다.

제5조(업무) ① 창업지원단 운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정부의 대학창업 육성에 관한 사업 운영 및 지원
- 2. 창업과려 산·학·연·과 협력사업
- 3. 창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창업 비교과프로그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

- 5. 창업보육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창업교육 및 창업실습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창업연계전공과 대학원 창업 무논문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창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창업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창업보육센터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창업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창업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학생창업기업(창업동아리) 육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본교 내 사업화지원프로그램의 개발 ·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창업사업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창업메이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메이커 교육 및 제작 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본교 내 메이커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창업메이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- ⑥ 창업전략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창업지원단 대학 정보공시 등 관련 창업 지표 관리
 - 2. 창업 관련 제반 사업 및 업무 성과 관리(KPI 지표 관리 포함)
 - 3. 창업 지원 대상별 지원 전략 수립 및 창업지원단 홍보
 - 4. 창업 관련 신규 자체 사업 발굴 및 계획

5. 창업 관련 신규 공모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제반 작업 지원

제3장 위원회

- 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지원단과 각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지원단 소관 규정 및 지침의 제정ㆍ개정
 - 2. 창업지원, 창업교육 지원 및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
 - 3. 그 밖에 지원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부처장, 교무부처장, 학생부처장, 산학협력부단장, 교육센터장 및 보육센터장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은 교내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.
 -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⑥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다.
- 제7조(자문위원회) ① 지원단의 창업교육 지원 및 창업보육 활성화 등 주요정책 수립을 위하여 창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단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교내·교외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.

-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, 수당,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조(소위원회) ① 창업지원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센터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각 센터별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장 운영

- 제9조(재정 및 회계) ①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지원금, 대학회계, 산학협력단회계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
 - ② 단장은 지원단의 세입·세출을 총괄하되, 세부사업별로 집행부서의 센터장에 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
 - ③ 지원단의 회계는 재정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과 본교 및 산학협력단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.
 - ④ 각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⑤ 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참여 인력에게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0조(운영지침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(제542호, 2020. 6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

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(제595호, 2021. 2. 26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19호, 2021. 6. 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64호, 2022. 2. 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제1항,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의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전략기획팀에 관한 변경·신설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(제698호, 2022. 8. 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9조제5항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인력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